

#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 정정사항 : 4페이지 계약체결 시작일 22.08.09 (월) → 22.08.09 (화)로 요일 표기가 잘못된 점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콜센터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 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Home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https://brand.halla.co.kr/cheonan/>)을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차후, 방문 예약방식 으로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 홈페이지 (<https://brand.halla.co.kr/cheonan/>)를 통해 분양 일정 안내, 청약 안내, 상품안내,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대표번호 (☎ 1533 - 0528)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 02. 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7. 08. 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이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 (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

구 분	대 상 (주택 소유 구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가점제 청약 제한 대상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처분조건)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 (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 제7호)	7년간

※ 2020. 04. 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Home > 마이 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7. 08.)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7. 0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에 1년 (2021. 07. 08. 이전부터 거주)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 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9. 11. 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불필요	필요(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1순위, 24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APT (특별공급 / 1·2순위)	○	○	○	○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 가상 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 (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 (2018. 12. 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 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 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 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 09. 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 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함)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s://brand.halla.co.kr/cheonan/>)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12. 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 (가점 미적용 시 추첨 순)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천안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20. 12. 18.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 기간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므로,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관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0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 01. 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 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일반 1순위 해당 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일반 1순위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거주자)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7월 18일(월)	07월 19일(화)	07월 20일(수)	07월 21일(목)	07월 28일(목)	08월 09일(화) ~ 08월 15일(월)
방 법	인터넷 청약(09:00~17:30)	인터넷 청약(09:00~17:30)	인터넷 청약(09:00~17:30)	인터넷 청약(09:00~17:30)	개별 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10:00~16: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 건본주택(정보 취약 계층)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정보 취약 계층)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청약Home 건본주택 : 천안시 부대동 822번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02. 28. 시행된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 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주택과 - 27779호 (2022.07.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0번지 (부성지구 B-1BL)
- 공급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 동 총 654세대  
[특별공급 344세대 (일반[기관추천] 65세대, 다자녀가구 65세대, 신혼부부 130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 최초 65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시기: 2025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349	01	084.9865A	84A	84.9865	27.0955	112.0820	63.4176	175.4995	49.6288	311	30	25	45	7	27	134	177	18
		02	084.9879B	84B	84.9879	27.0970	112.0849	63.4186	175.5035	49.6297	185	20	25	65	7	28	145	40	10
		03	084.9847C	84C	84.9847	27.4666	112.4513	63.4162	175.8676	49.6278	158	15	15	20	5	10	65	93	9
합 계											654	65	65	130	19	65	344	310	37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수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 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의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면적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 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09.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 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 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 간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함)
- 공급 대상의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추후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키즈 스테이션, 헬로우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경비실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확보 대수는 864대이며 세대 당 1.32대/호의 비율입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거래 계약서의 실제 거래금액 (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없음)

타입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 시	2022. 10. 28	2023. 03. 28	2023. 08. 28	2024. 01. 29	2024. 05. 28		2024. 10. 28
84㎡A	311	1층	6	110,103,000	284,197,000	394,30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39,430,000	118,290,000	
		2층	14	110,103,000	292,597,000	402,70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120,810,000	
		3층	18	110,103,000	296,797,000	406,90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122,070,000	
		4층	18	110,103,000	300,997,000	411,100,000	41,110,000	41,110,000	41,110,000	41,110,000	41,110,000	41,110,000	41,110,000	123,330,000	
		5~9층	90	110,103,000	305,197,000	415,30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124,590,000	
		10~19층	136	110,103,000	309,297,000	419,40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125,820,000	
		20~25층	29	110,103,000	313,497,000	423,60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127,080,000		
84㎡B	185	1층	6	110,105,000	283,195,000	393,300,000	39,330,000	39,330,000	39,330,000	39,330,000	39,330,000	39,330,000	39,330,000	117,990,000	
		2층	1호 라인	2	110,105,000	289,495,000	399,60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39,960,000	119,880,000
			2호 라인	8	110,105,000	291,595,000	401,70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20,510,000
		3층	1호 라인	2	110,105,000	293,695,000	403,800,000	40,380,000	40,380,000	40,380,000	40,380,000	40,380,000	40,380,000	40,380,000	121,140,000
			2호 라인	8	110,105,000	295,795,000	405,90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121,770,000
		4층	1호 라인	2	110,105,000	297,995,000	408,10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122,430,000
			2호 라인	8	110,105,000	299,995,000	410,10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123,030,000
		5~9층	1호 라인	10	110,105,000	302,195,000	412,300,000	41,230,000	41,230,000	41,230,000	41,230,000	41,230,000	41,230,000	41,230,000	123,690,000
			2호 라인	40	110,105,000	304,195,000	414,30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124,290,000
		10~19층	1호 라인	20	110,105,000	306,395,000	416,50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41,650,000	124,950,000
			2호 라인	62	110,105,000	308,395,000	418,500,000	41,850,000	41,850,000	41,850,000	41,850,000	41,850,000	41,850,000	41,850,000	125,550,000
		20~25층	1호 라인	7	110,105,000	310,595,000	420,700,000	42,070,000	42,070,000	42,070,000	42,070,000	42,070,000	42,070,000	42,070,000	126,210,000
			2호 라인	10	110,105,000	312,595,000	422,700,000	42,270,000	42,270,000	42,270,000	42,270,000	42,270,000	42,270,000	42,270,000	126,810,000
		84㎡C	158	1층	6	110,101,000	287,499,000	397,600,000	39,760,000	39,760,000	39,760,000	39,760,000	39,760,000	39,760,000	39,760,000
2층	9			110,101,000	295,899,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3층	9			110,101,000	300,099,000	410,20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123,060,000	
4층	9			110,101,000	304,299,000	414,400,000	41,440,000	41,440,000	41,440,000	41,440,000	41,440,000	41,440,000	41,440,000	124,320,000	
5~9층	45			110,101,000	308,499,000	418,60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41,860,000	125,580,000	
10~19층	63			110,101,000	312,699,000	422,80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42,280,000	126,840,000	
20~25층	17			110,101,000	316,899,000	427,0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 본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 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면적은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분양대금 납부 시기, 중도금 대출 신청 및 발생 일자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비주거 부분(근린생활시설)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별도로 사업승인 도서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 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 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 자격과 관련하여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각종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 일이 입주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 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후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3	2	9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2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5	4	17	
	중소기업 근로자	8	5	4	17	
	장애인	충청남도	2	2	1	5
		대전광역시	2	2	1	5
		세종특별자치시	2	1	1	4
	계	30	20	15	6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5	25	15	65
	신혼부부 특별공급		45	65	20	1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7	5	19	
생애 최초 특별공급		27	28	10	65	
합 계		134	145	65	34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 최초)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 사항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별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ul> </li> </ul>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 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출산 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 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100	
미성년 자녀 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 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 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 (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순서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13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 12. 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 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② 세대수의 20%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우선 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 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 12. 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 (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배우자의 친자녀 (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 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 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원 ~ 7,450,721원	7,200,810원 ~ 8,640,971원	7,326,073원 ~ 8,791,286원	7,779,826원 ~ 9,335,790원	8,233,579원 ~ 9,880,294원	8,687,332원 ~ 10,424,797원
	일반 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원 ~ 8,692,508원	7,200,810원 ~ 10,081,133원	7,326,073원 ~ 10,256,501원	7,779,826원 ~ 10,891,755원	8,233,579원 ~ 11,527,009원	8,687,332원 ~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원 ~ 9,934,294원	8,640,972원 ~ 11,521,294원	8,791,287원 ~ 11,721,715원	9,335,791원 ~ 12,447,720원	9,880,295원 ~ 13,173,725원	10,424,797원 ~ 13,889,730원
소득 기준 초과 / 자산 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 가액 (3.31억원) 충족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 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89,731원 ~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초과 ~ 16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3.3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 소득(453,75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 (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 자산 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 + 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5세대

- 신청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 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선정 방법**

- 2021. 11.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② 세대수의 20%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 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 소득(453,75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 (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 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 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 + 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주 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td> </tr> <tr> <td>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td> </tr> <tr> <td>단독주택</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주택 외</td> <td></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외													
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Ⅲ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시, 기타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할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초·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 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에 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 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 구분	순 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 자격
민영 주택	1. 해당 지역 -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75%) 및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①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세대주</li> <li>②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세대주</li> <li>※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li> <li>■ 추첨제 우선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 적용: 1순위 추첨제 공급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li> <li>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li> <li>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li>※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청약 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 청약 가능)</li> <li>① 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③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li> </ul>
	2. 기타지역 - 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 충청남도 거주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청약 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에 의거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IV 신청 일정 및 장소

###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2021. 07. 18 (월) (청약 Home 인터넷 : 09:00 ~ 17:30) (건본주택 : 10:00 ~ 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건본주택 ☎ 1533 - 0528
일반공급	일반 1순위 해당 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2022. 07. 19 (화)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일반 1순위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22. 07. 20 (수) 09:00 ~ 17:30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2순위	2022. 07. 21 (목) 09:00 ~ 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 접수 (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 취약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 시간 : 09:00 ~ 16:00,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경 유의)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 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때]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 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과 "청약 가상 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 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 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Step 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 (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 (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 ⇒ 「세대 구성원 등록 / 조회」 ⇒ 「세대 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 신청」 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 검증

※ 상기 접수 시간 (17:30)은 청약 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 (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 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 반 공 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 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 서명 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서명한 위임장</b>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 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 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b>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b>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서명한 위임장</b>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 자격 전산 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li> <li>2) 소형·저가 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b>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b>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b>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b>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세대주인 경우로서</b>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b>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 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19. 11. 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li> <li>3) 주택공급신청자의 <b>30세 이상인 직계비속</b>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b>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ol>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 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 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무주택세대 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ol> </li> </ul>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 신청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 합니다.</li> <li>• 입주자선정 시 선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 12. 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 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천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 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V 당첨자발표 및 계약 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 07. 28.(목)</li> <li>• 확인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 08. 09.(화) ~ 2022. 8. 15.(월, 10:00~16:00)</li> <li>• 장소: 견본주택 ☎ 1533-052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822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 (<https://brand.halla.co.kr/cheonan/>)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2. 07. 28. (목) ~ 2022. 08. 06.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 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을 통해 첨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 07. 28. (목)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 홈> 청약 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및 부적격 여부 확인

구 분	내 용
서류 제출 기간	2022. 08. 01. (월) ~ 2022. 08. 08. (월)
대상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별도 일정 통보)
제출장소	건본주택(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822번지)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전에 건본주택 방문 예약을 진행하여야 함

-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
-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가능 일정 및 시간대, 예약 방법 등 서류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당첨자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 제출 재사용 불가)
-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사업 주체는 접수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이 이전에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정해진 기간 내 (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 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대리 계약은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 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 사정 불안정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 증명 및 출산 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상기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 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인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 증명 (신고 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 급여 지급명세서 (월별)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 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 증명 및 출산 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상기 임신 증명서류 및 출산 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 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 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 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산 산정 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 (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인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참조>

	O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 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 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접수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구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 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1]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직인 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 해당 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직인 날인)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 (직인 날인) 제출	- 해당 직장 -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직인 날인)	- 해당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근로소득 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국민연금 정산용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부분)	- 세무서 - 국민연금공단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 날인) -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해당 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 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건본주택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군 복무 중으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 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만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 2]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세부 내역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 한함 ②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 사실 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④ 해당 직장 / 세무서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필 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기준 참조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생업 사정 불안정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 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증명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 멸실·철거 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접수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 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중복청약 및 이중 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하며,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하며, 청약 접수일자와는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입증서류 (※ 계약체결 전 제출, '단순 부임' 청약 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용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용도는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자격검정 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기타 사업 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 내에 해명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나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 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대금	전북은행	1013-01-4378358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등·호수, 계약자 명 필히 기재 요망 ex) 103동 702호 → 1030702 홍길동

- 상기 입금계좌는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 계좌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하시기 바라며,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M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 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이며,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 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총 중도금 60% 중 50% 한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중도금 10%는 계약자 본인이 사업 주체가 지정된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및 금융정책의 변동으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또는 계약하기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나, 시행위탁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대출 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 은행과 대출 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부 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 수수료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러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 관련 정부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 후불제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정하는 입주 지정 개시 월의 납입일 (입주 지정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 등 변경된 입주 지정 개시 월의 이자 납부일 기준)까지는 시행위탁자가 선 납부 (대납)하고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만 해당하지 않음), 입주 지정 개시 월의 이자 납입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입주예정자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선 납부 (대납)한 이자 후불제 관련 대출이자 전액은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사업 주체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 (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 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 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시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5년 02월 예정
-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1. 02. 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 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지정 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 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출현,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건으로 인한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 (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의 단축을 요청할 경우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으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헬로우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 GX, 실내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동아리실, 다목적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근로자휴게소

■ 하자 판정은 사용검사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VI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 고
		계약 시	2022. 10. 28	입주지정일	
84㎡A	12,700,000	1,270,000	1,270,000	10,160,000	
84㎡B	12,500,000	1,250,000	1,250,000	10,000,000	
84㎡C	15,800,000	1,580,000	1,580,000	12,640,000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 간 확장구간 내력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 홈통 등의 제거로 기본형 (비 확장 세대) 선택 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세대 확장형 계약을 권장합니다.
- 비 확장 세대를 선택하실 경우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일부 마감재는 확장 세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확장 시 시스템 선반, 주방등, 아일랜드등, 식탁등이 추가 설치되며, 주방가구는 발코니 확장증가면적에 따라 확장형 가구로 배치됩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0. 02. 18.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등의 시공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 후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로 인한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 홈통이 설치되는 비 확장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확장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 발코니 선택 시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외부 발코니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틀은 최종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틀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 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 구분	은행명	납부 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전북은행	1013-01-4378477	(주)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좌, 추가 옵션 품목 납부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계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 이자 없음)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 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 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제조사	옵션 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모델명	금 액	비고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LG	옵션 1	거실 + 침실 1	R-W0720C2CP R-W0320C2CP	3,300,000	실내기 2대	거실, 침실 1 냉매 배관만 시공
		옵션 2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R-W0720C2CP R-W0320C2CP R-W0200C2CP X 2EA	5,500,000	실내기 4대	
		옵션 3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 알파룸	R-W0720C2CP R-W0320C2CP R-W0200C2CP X 3EA	6,600,000	실내기 5대 (84㎡B 타입 제외) A타입 알파룸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경동나비엔	-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TAC521-20S	1,200,000	NRT-20 (룸컨트롤러) 포함	일반 전열교환기 설치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옵션 적용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 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 용 전기 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실의 냉매 배관 및 전기 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84㎡A 타입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옵션 3'은 알파룸 확장 옵션 미선택 시(일반 침실)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 1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안방 발코니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 시스템 설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적용되는 기본 전열교환기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제조사	기본형 - 1안	옵션 선택형 (유상) - 2안	모델명	금액	비고
가전 기기	빌트인 전기쿡탑	삼성전자	3구 가스쿡탑	3구 전기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NZ63T5601AK	660,000	
	빌트인 전기오븐	삼성전자	수납장 설치	빌트인 전기오븐	NQ36A6555CK	330,000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냉장고 상부장	비스포크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RR39T7695AP (냉장고) RZ32T7665AP (냉동고) RQ32T7645AP (김치냉장고)	5,5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수납장 설치	빌트인 식기세척기	DW60T7075FS	840,000	
	빌트인 의류관리기	삼성전자	미설치	빌트인 에어드레서 (수납장 포함)	DF60A8500TG	1,400,000	드레스룸 설치
	비데	이누스	미설치	부부욕실 비데 설치	IST-N53E	150,000	
	전동식 빨래건조대	웰테크	미설치	천장 설치 전동식 빨래 건조대	AL4000FS	130,000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기본형 - 1안	옵션 선택형 (유상) - 2안	금액			비고	
				84㎡A	84㎡B	84㎡C		
현관	현관 중문	미설치	유리 슬라이딩 도어 (3연동)	1,500,000	1,500,000	1,550,000		
	현관 팬트리	가구 도어 (날개벽 포함)	가구 도어 (날개벽 포함) + 시스템 선반	550,000	550,000	-	C 타입 해당 없음	
거실	거실 아트월	일반 타일 (400 x 800)	84㎡A 타입 : 세라믹 타일 (1,200 x 1,200) 84㎡B·C 타입 : 세라믹 타일 (800 x 1,200)	3,200,000	3,300,000	3,300,000		
	거실 천장 간접조명	우물 천장 + 사각 직부등	간접조명 우물 천장 + 매입형 다운 라이트 간접조명 우물 천장	330,000 -	- 300,000	- 300,000		
주방	주방 옵션 1	벽체 : 일반 타일 (600 x 300) + 상판 : 인조대리석 (MMA) + 기본 싱크볼	벽체 : 세라믹 타일 + 상판 : 세라믹 타일 + 사각 싱크볼	5,900,000	5,100,000	5,100,000		
	주방 옵션 2	일반형 주방 도어 (LPM) + 박스형 후드 + 일반 하드웨어	고급형 주방 도어 (유리 플랩장 + PET 마감) + 독립형 후드 + 유럽산 하드웨어	2,300,000	2,600,000	2,600,000	옵션 1·2·3 중 택일 (擇一)	
	주방 옵션 3 (약 10% 할인)	벽체 : 일반 타일 (600 x 300) + 상판 : 인조대리석 (MMA) + 기본 싱크볼 + 일반형 주방 도어 (LPM) + 박스형 후드 + 일반 하드웨어	벽체 : 세라믹 타일 + 상판 : 세라믹 타일 + 사각 싱크볼 + 고급형 주방 도어 (유리 플랩장 + PET 마감) + 독립형 후드 + 유럽산 하드웨어	7,400,000	6,900,000	6,900,000		
알파룸	84㎡A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1	알파룸 + 일반 목문 (벽체 포함)	장식장 + 팬트리 가구 (가구 도어 + 시스템 선반)	3,500,000	-	-	옵션 1·2·3 중 택일 (擇一)	
	84㎡A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2		장식장 + 팬트리 가구 (가구 도어 + 시스템 선반) +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3,800,000	-	-		
	84㎡C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3	알파룸 + 일반 목문 (벽체 포함)	유리 슬라이딩 도어	-	-	900,000		
침실 1	침실1 드레스룸 옵션 1	바닥 / 벽 / 천장 기본마감 + 화장대 (날개벽 포함)	드레스룸 (가구 도어 + 고급형 조명 선반)	3,500,000	3,600,000	3,200,000	옵션 1·2 중 택일 (擇一)	
	침실1 드레스룸 옵션 2		드레스룸 (가구 도어 + 고급형 조명 선반) + 의류 관리기 (장 포함)	4,600,000	4,700,000	4,300,000		
침실 2·3	84㎡A·B 타입 침실 2·3 불박이장 옵션 1	미설치	침실 2 불박이장	1,200,000	1,200,000	-	옵션 1·2·3 중 택일 (擇一)	
		미설치	침실 3 불박이장 - A	1,500,000	1,500,000	-		
	84㎡A·B 타입 침실 2·3 멀티룸 특화 옵션 2	일반 침실 + 일반 목문 (벽체 포함)	침실 2 유리 슬라이딩 도어 + 침실 2·3간 벽체 이동	1,300,000	1,300,000	-		
	84㎡A·B 타입 침실 2·3 멀티룸 특화 옵션 3	일반 침실 + 일반 목문 (벽체 포함)	침실 2 유리 슬라이딩 도어 + 침실 2·3간 벽체 이동 + 침실 3 불박이장 - B	3,300,000	3,300,000	-		
	84㎡C 타입 침실 2·3 불박이장 및 드레스룸	미설치	침실 2 불박이장 설치	-	-	1,200,000		멀티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침실 2 불박이장 설치 선택 불가
		미설치	침실 3 드레스룸 설치 (가구 도어 + 시스템 선반, 벽체 포함)	-	-	1,300,000		
84㎡C 타입 침실 2·3 멀티룸 특화 옵션	일반 침실 + 일반 목문 (벽체 포함)	침실 2·3간 벽체 이동 + 침실 2 유리 슬라이딩 도어 설치	-	-	1,300,000			
복도 팬트리	84㎡B 타입 복도 팬트리	가구 도어 (날개벽 포함)	가구 도어 (날개벽 포함) + 시스템 선반	-	660,000	-	A·C 타입 해당 없음	

## ■ 유상옵션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 가전 포함)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 가전 포함)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시 날개벽 포함하여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가 제시하여 입주자가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 내용,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일정과 납부 금액은 사업 주체가 적의 조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 비내력벽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 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B 타입 현관 팬트리, 84㎡B 타입 복도 팬트리 옵션 미선택 시 팬트리의 날개벽과 가구 도어만 시공됩니다.
- 주방 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일반 타일 (600X300), 상판은 인조대리석 (MMA) 상판이 설치되며, 기본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세라믹 상판과 기본 품목인 인조대리석은 상판 두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의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침실 1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바닥 (마루), 벽 / 천장 (도배지)로 시공되며, 조명은 드레스룸 일반 매입등으로 설치됩니다.
- 침실 1 드레스룸 옵션 2 선택 시 의류 관리기가 설치되어 (장 포함) 해당 면적만큼 시스템 선반이 축소되고, 침실 1 옵션 2·3 선택 시에만 의류 관리기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침실 1 드레스룸 옵션 1, 2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 도어로 인해 드레스룸 매입 센서등이 설치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발코니 확장의 경우) 84㎡A 타입은 상부 장, 키 큰 장이 설치되고 84㎡B·C 타입은 상부 장만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기청정형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
- 84㎡A 타입 알파룸 옵션 미선택 시 날개벽이 조정되고, 팬트리 가구와 장식장은 삭제되고 평천장으로 설치되며 일반 목문이 설치됩니다.
- 84㎡A 타입 알파룸 옵션 선택 시 팬트리에 센서등이 설치되며, 미선택 시 천장에 침실등으로 변경됩니다.
- 84㎡A 타입 알파룸 옵션 선택 시 장식장 조명의 세부 사양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장식장 벽 / 상판은 세라믹타일로만 시공되며, 종류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84㎡A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2 선택 시 우물천장 간접조명이 추가 설치되며, 옵션 유무에 따라 식탁 매입등의 위치와 방향이 변경됩니다.
- 84㎡A 타입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기존 알파룸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급, 배기) 및 온도조절기 (거실 온도 조절과 통합)는 삭제되며, 해당 옵션 금액은 미선택 시에 알파룸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및 온도조절기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84㎡A·B 타입 '침실 2·3 불박이장 옵션 1' 선택 시 침실 2·3의 불박이장을 각각 또는 모두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때 옵션 3에 포함된 불박이장 -B와 규격과 형태가 상이합니다.
- 84㎡A·B 타입 '침실 2·3 멀티룸 특화 옵션 3'의 불박이장 -B는 불박이장 -A보다 더 큰 규격의 제품으로, '멀티룸 특화 옵션 2'를 선택 시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 침실 2·3 관련 옵션 미선택 시 각 침실에 목문이 설치되며, 모든 유리 슬라이딩 도어의 세부 사양과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 타입 침실 2·3 불박이장 및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침실 2 불박이장 또는 침실 3 드레스룸을 각각 또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4㎡C 타입 침실 2·3 멀티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추가로 침실 3 드레스룸 옵션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침실 2 불박이장 옵션은 벽체이동으로 인해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침실 2·3 관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불박이장으로 인해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수직으로 배열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리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인해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랜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를 설치하여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 배관 및 밸브는 설치됩니다.
- 별도 계약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 따라 일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및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하기 플러스 옵션 납부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 (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 구분	은행명	납부 계좌	예금주	납부시기		비고
				계약금 (10%)	잔금 (90%)	
추가 선택 품목	전북은행	1013-01-4453465	(주)무궁화신탁	계약 시	입주지정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선택 품목에 대한 대금은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03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기재 예시 : 1030702 홍길동)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 (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유상옵션 선택 품목 계약 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 일정과 납부 금액은 고지한 기준에 준합니다.
- 계좌 오류 등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발코니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 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Ⅶ

##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2021 - 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9)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분양 홈페이지 (<https://brand.halla.co.kr/cheona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 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은 전체 동(9개 동) 2개 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 출입구, 부출입구 2개소에서 진·출입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1층 유효높이 2.7m, 지하 2층 유효높이 2.4m로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주행로 폭은 법적 6m이상 적용 됩니다 .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 청의 고유 마을 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 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 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 확장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통보하시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 부동산거래규정에 의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대지면적을 정산 처리하는 경우 입주자는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권권에 차이가 있으며, 주변 건물 신축 및 기타 이유로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 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 내 레벨 계획으로 인한 단 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레벨 차이로 인해 단 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마감 계획은 "조경석, 토목 옹벽, 건축 벽체" 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공용조명 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 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차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 운동 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천장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 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 출입구 인접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된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제연 환풍,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 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 세대는 지상 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 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인근 혐오 시설 존재 여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 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건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 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1%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단, 증감 면적이 소수점 이하의 변동일 경우 정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출현,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 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허가 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 개선과 구조 상세 해석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 계획은 예정 또는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A, 84㎡C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 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미건립 타입(84㎡B 타입)의 마감은 건립 타입(84㎡C 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 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 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사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시험적 재현)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 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 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 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 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마트스위치 등의 제품사양 및 디자인,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 스위치, 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스위치의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PL 창호의 제조사 및 사양, 디자인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며, 냉방전용 본공사 계약 모델은 추후 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옵션 시 추가 품목, 추가 선택 품목 (플러스 유상 옵션 품목), 전σι품 등이 혼재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σι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의 고저 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미건립 세대에 대하여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 및 단위 세대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 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 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등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주택건설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 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지하 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패턴 및 색상,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물의 디자인, 노출되는 축대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은 단지 외부와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단지 외부 사이 일부 구간에 대하여 경계 헨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문주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 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관청 (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저층부의 내외부는 테라코타, 석재, 석재뿔 등 혼합 마감되며, 주동 저층부와 연계된 동 출입구, 특화시설, 부대시설, 상가시설에는 별도의 마감 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 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피트니스 클럽 등)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 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 복리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집기류 (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 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 차로 인해 배수 펌프질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회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 복리시설, 지하층 층높이,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등 부대 복리시설의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 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한라비발디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와 주차장 레벨 차이로 인한 경사도가 계획되어 있고, 서측 부출입구는 데크 하부(지하 1층)을 진입하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재연 팬의 급·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천창, 쓰레기보관소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 동 필로티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은 같은 라인이라도 층별 공용 홀의 구조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1층 층고는 부대시설 및 필로티 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빗물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빗물 저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면적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 조경 및 부속 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시 실외기 설치로 인해 미관 및 소음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분배에 감긴 철사, 고무 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부대 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상세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위치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변경, 실내 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주택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는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 복리시설의 실 내부 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옥외안테나는 101동, 106동, 108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중계 장치는 지하 2층 101동, 109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측정 후 설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및 전기실은 지하 1~2층 102동, 103동에 설치되며, 환풍은 각 동마다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 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 등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시계획인가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등) 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 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 차 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협오 시설 여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담당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 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도로 및 도로 선형 구조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북측에 25m 도로변과 면하고 있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에 있는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 동, 서측은 17m, 북측은 25m 도로 예정으로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협오 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 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건물 진입부와 보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외부 일부 구간에 조경석 및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높이, 옹벽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감압시설 및 한전 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 상세 해석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 극복을 위해 대지 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 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주민 운동 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천창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 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은 미술 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외기실 등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환기구(급/배기)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 시설은 A/D를 통한 배기 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층 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 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 천정, 커튼 박스, PL 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의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록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 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록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옥상층에 설치되는 일부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붕 층(107동 제외)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등 관리는 입주자가 해야 합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제방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동은 건축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배치되었으나, 단지의 총 세대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 수인한도는 68.96%로 102, 103, 104동 등 일부 동의 저층 세대는 향 및 계절에 따라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부대 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 램프, 외부계단, 천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와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관(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동 2호, 3호 라인 하부 필로티는 단지 내 보행 도로 및 휴게시설(벤치 등)이 계획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측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06동, 107동 남측으로 1층에는 어린이집, 101동 지상층(1층)에는 헬로우라운지(주민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며, 106동 지상층(1층)에는 경로당 및 돌봄센터가 위치하며, 주민 운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 동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108동, 109동 지하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보행자 통로,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주차장,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출입을 위한 보행자 통로는 101동·106동 주 출입구와 부출입구, 107동·108동 간에 계획되어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07동, 108동, 109동 인근에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이 계획되어 인접 동 및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각 동 및 부대 복리시설, 설비시설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 반영월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 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 층에 의자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 발전설비, 피뢰침,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옥상(107동, 108동, 109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주동 배치로 인접 세대 위치 및 창호 설치에 따라 동 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통기 배관의 배기구가 옥상에 설치되며 냄새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문주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 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 여부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정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EV 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근린 생활 - 아파트 주차장 공유내용 명기>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 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 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 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사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택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 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 시설은 AD를 통한 배기 시설이 아닌, 세대별 직배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 외벽에 환기구 마감 캡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 욕실 및 공용 욕실은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 욕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및 일반 가구 도어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힘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 문의 상하부 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 홈통, 설비 및 전기 각 쟁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부 조적 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힘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문으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타일별 평면에 따라 개폐 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A, 84㎡B (84㎡C 참조), 84㎡C]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우더장 서랍 내부의 최대 적재하중은 15kg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세대와 필로티 상부 세대는 대피공간(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84㎡A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할 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 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벌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주방 렌지 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 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 장의 일부 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 배수구 및 입상 배관, 가스계량기(가스 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과 선반들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시 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 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 규정에 근거)은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 배관은 보온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천장 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 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시각 경보기, 경종 등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 도어는 상/하 부장 위치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 큰 장 도어 및 마감판 등은 국산 도어로 설치됩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배수 배관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하여 창호 및 루버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조명 스위치/세대 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개별적인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충청남도 천안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지방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천안 도시가스(JB㈜)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될 예정이며, 필요 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 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A/C 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 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사 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버스 노선 및 버스 운행 횟수 미확정으로 본 사업지 준공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설치 위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유입 학생은 신설 초등학교 및 천안 학군 서북부구역 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나, 천안시 교육청의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버스를 통해 통학할 수 있습니다.

## VIII

### 기타 계약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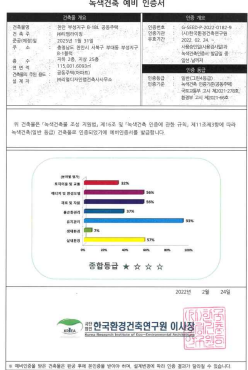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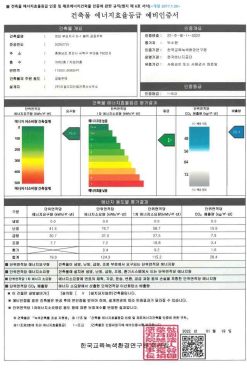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단열 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 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 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한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덕원기술단	대림엠이씨
감리금액	2,782,428,000	480,339,000	506,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2-101-0007600호	일천구백육억이백삼십칠만원정 (₩190,602,370,00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 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 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 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 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금을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 오토, 발코니 샷시, 그 밖의 마감재 공사)와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 주체·시공사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 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 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 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 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 시공사인 (주)한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 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과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본 분양 물건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 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티엠라이징과 시공사인 (주)한라에게 있습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 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주체와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 호	(주)무궁화신탁	(주)티엠라이징	(주)한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7, U-CITY 212호 (의의동, U-CITY)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 2867418	134811 - 0598790	110111 - 0274699

■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건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안내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822번지</li> <li>■ 운영 기간 : 2022. 07. 08. (금) ~ 분양 종료 시</li> <li>※ 당첨자 발표일 이후 건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예비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기간부터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운영 시간 : 10:00 ~ 17:00</li> <li>※ 정부 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건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본주택 입장 및 상담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b>분양문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건본주택 : ☎ 1533 - 0528</li> </ul>	
홈페이지	QR코드
<a href="https://brand.halla.co.kr/cheonan/">https://brand.halla.co.kr/cheonan/</a>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